



오송회 사건

【결정사안】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 9명이 1978년부터 1982년에 걸쳐 북한 찬양, 국외공산계열 찬양, 반미 발언, 반정부 발언, 이적단체 ‘오송회’ 결성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반공법 제4조(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98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역시 유죄판결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 『병든 서울』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 음주 중 북한 노래를 부른 것을 빌미로 수사에 착수하여 피해자들을 불법 연행한 후,
2.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허위조작하거나 확대 왜곡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심각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허위로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 사실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구금, 고문한 수사관들을 입회, 배석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전주지법에 기소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 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5. 전주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

한 것이며, 결코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참고인들의 범죄사실 부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을 축소적용하기보다 오히려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고, 광주고법은 위의 공소사실에 대한 별다른 보강증거 없이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고, 대법원 또한 상소를 기각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6. 경찰, 검찰, 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바-3479 오송희 사건

【신청인】 조성용 외 8인

【결정일】 2007. 6. 12.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78년에서 1982년 사이 군산제일고등학교 등 군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 관련자인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이옥렬, 황운태, 강상기, 채규구 7명은 군산제일고 교사로, 엄택수는 군산제일중 교사로, 조성용은 KBS 남원방송국 방송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¹⁾

1) 이들의 출신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이광웅, 박정석, 이옥렬, 조성용, 엄택수는 이리 남성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며, 전성원은 이리 고등학교, 채규구는 군산고등학교, 강상기는 전주 신흥고등학교, 황운태는 서울 성남고등학교를 각각 졸업하였다. 당시 이광웅



1982. 12.경 전북도경 대공과는 위 이광웅, 박정석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반공법 제4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국외공산계열 찬양고무(국가보안법 제7조제2항)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이적표현물 소지(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 등 혐의로,

위 전성원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및 국외공산계열 찬양고무(국가보안법 제7조제2항), 이적표현물 소지(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 등 혐의로,

위 이옥렬, 황운태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혐의로,

위 조성용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반공법 제4조), 국외공산계열 찬양고무(국가보안법 제7조제2항) 등 혐의로,

위 강상기, 채규구와 엄택수를 이적표현물 소지(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 불고지(국가보안법 제10조) 등 혐의로 조사하였고,

1983. 1. 전주지방검찰청이 이들을 조사 후 기소하였다.

재판 결과, 1983. 5. 24. 전주지방법원은 이광웅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박정석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전성원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이옥렬과 황운태, 조성용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하고, 강상기와 채규구, 엄택수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를 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찰이 각각 불복, 항소하자, 1983. 7. 28. 광주고등법원은 이광웅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박정석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전성원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이옥렬, 황운태, 조성용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3년, 강상기, 채규구, 엄택수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등 제1심에 비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옥렬 등을 법정구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1983. 12. 27.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실형을 복역하였다.

신청인 박정석 등 9명(이광웅은 아들 이진명이 신청)은 2006. 5. 12. 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42세, 박정석 37세, 전성원 27세, 이옥렬 28세, 황운태 30세, 강상기 35세, 채규구 30세, 엄택수 30세, 조성용 45세, 이광웅은 사망하였음.

II. 의혹 사항

1. 불법감금 여부

신청인들이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과 군산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10여 일 내지 20여 일 동안 불법 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2. 고문, 가혹행위 여부

위 수사관들이 신청인들을 장기간 불법 감금 상태에서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신청인들에게 잠안재우기, 구타,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는지 여부

3. 북한 찬양 고무 등 여부

신청인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이옥렬, 황운태, 조성용이 북한 또는 국외공산계열을 찬양 고무하였는지 여부, 신청인 강상기, 채규구, 엄택수가 위와 같은 활동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4. ‘오송회’라는 이적단체구성 여부

1982. 4. 19. 신청인 이광웅, 박정석이 전성원, 황운태, 이옥렬 등과 함께 군산제일고등학교 뒷산에서 ‘오송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5. 이적표현물 소지 여부

신청인 박정석, 전성원, 강상기, 채규구, 엄택수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서적이나 표현물을 소지하였는지 여부

III.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대상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및 조작의혹 사건 등을 의미한다. 다만, 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기본법상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 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사건의 실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므로 기본법이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고, 이와 함께 수사관들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의 범위에 속하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와 허위 조작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7. 4. 3.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신청서 검토를 거쳐 전주지검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공판기록,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보존 수사기록을 분석한 후, 피해자, 참고인 및 수사관에 대한 진술청취를 실시하였다.

1. 자료조사

- 전주지검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재판기록 16권 5763매

전북도경 대공분실의 수사착수 경위 및 수사과정, 피해자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분석, 검토하였다.

2. 진술청취

신청인 8명,²⁾ 당시 참고인 및 증인 12명,³⁾ 수사관 12명⁴⁾에 대한 진술청취를 통해 수

2) 이광웅은 사망하여 진술청취를 하지 못함, 전성원은 미국 이민으로 진술서를 받음.

3)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 양○○, 전○○, 정○○은 소재지 불분명으로 진술청취하지 못함.

4) 당시 오송회 사건에 참여했던 수사관 중 신○○, 고○○ 임○○은 사망하였으며, 검사 안대찬은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어 진술청취하지 못함.

사과정,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V. 조사결과

1. 시대적 배경

1979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1980년대 초반 내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공안국면을 강화, 지속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신군부 정권은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무원복무규정, 교육공무원승직규정, 교과용도서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당직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행정관리규정 등을 통해 교육내용 전반과 교육행정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며, 1980. 7. 30. 이른바 7·30조치를 단행하여 교육통제장치를 정비하는 한편, 교사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1988년 국회 문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기 동안 문교부는 각 시도교위에 ‘전담실’을⁵⁾ 설치, 교육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보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립중고교 교사 채용에도 과거 전력 등을 조회하는 등 인사 관리에 관여하였다.

건전한 비판의식을 키워주는 교육을 시행하려는 교사들에 대한 연행, 구금, 구속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 시기에 발생한 관련 사건의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면 ①수업내용에 국가보안법을 적용,⁶⁾ ②교육개선 활동에 국가보안법 적용,⁷⁾ ③간첩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연루, 입건⁸⁾된 사례들이 있다.⁹⁾

5) ‘전담실’은 교사들에 대한 사찰업무뿐 아니라 교사징계, 학부모 동태 감시 및 고발, 언론보도에 대한 항의, 교사집회 저지 등 중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각 시도교위에 지시하였다.(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역사비평사, 2004, 225~247쪽)

6) - ‘오송회’ 사건 : 1982. 11. 20. 군산제일고 교사 등 9명이 ‘오송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좌경의식화 교육을 시켰다는 혐의로 구속.

- ‘방기중’ 사건 : 1987. 11. 20. 강익중 『찢겨진 산하』(정경모 저, 거름)를 리포트로 냈다는 이유로 건국대 사학과 시간강사 방기중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7) - ‘상록회’ 사건 : 1983. 12.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소속 교사 등 9명과 대학교수 3명이 한국기독교교회문제연구원 연구작업의 일환으로 초·중·고 교과서에서 통일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연구분석하다가 전원 연행, 조승혁 목사, 이영희 교수, 강만길 교수 등 3명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1984. 1. 10. 구속.

- ‘민중교육’ 사건 : 1985. 8. 17. 교육무크지 『민중교육』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하여 필자 김진경(양정고 교사), 윤재철(성동고 교사) 씨와 출판사 주간 송기원 씨가 구속, 그밖에 이 책에 기고한 교사 10명 파면, 7명 강제사직, 2명 감봉, 1명 경고조치되는 등 필자 전원에게 징계를 받음.

8) - ‘부림’ 사건 : 1981. 9. 고호석(부산 대동고), 김희옥(부산 혜화여중), 설경혜(부산 감전국교), 윤연희(부산 모라여중) 등 교사 4명을 포함하여 부산지역 학생운동 관련자 19명이 북한친양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오송희 사건은 이 시기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연루된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꼽힌다.

2. 수사 및 재판과정

가. 수사착수 경위

1982. 7. 20. 전북 군산시 장미동 소재 시외버스정류소에서 전주직행버스주식회사 소속 버스에서 이 회사 종업원 전규춘(당28세)이 시집 『병든서울』(작가 오장환) 1권을 습득하여 군산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이에 군산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소속 양○○ 순경은 위 시집의 뒤표지가 군산제일고에서 발행하는 교지 『경암』의 표지임을 발견하고 그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위 고교를 중심으로 내사한바, 위 고교 복사실 직원을 조사하여 서무실 직원이 이광웅에게 복사를 해주었고, 위 이광웅이 그 복사본을 동료교사 등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지하였다.¹⁰⁾ 그리고 상부기관인 전북도경 대공분실에 1차 내사공작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신하자, 대공분실에 서는 위 내사결과에 따라 C급 공작으로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¹¹⁾

나. 전북도경 대공분실의 수사과정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1982. 11. 초경 군산경찰서 대공3계의 협조를 받아 위 이광웅 등을 연행한 후 대공분실과 근처 무주여인숙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11. 25.에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이옥렬, 황운태, 강상기, 채규구, 엄택수 등 8명의 구속영장을 먼저 발부받고, 11. 30. 조성용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전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하였다.

그리고, 1982. 12. 5.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이옥렬, 황운태 등으로 하여금 혐의사실을 재연시켜 검증조서를 작성한 뒤, 12. 13.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전주지방검찰청의 수사

위 사건이 송치된 당일부터 검찰은 전북도경 대공분실의 의견서를 토대로 박정석 등에

- '민중야학' 사건 : 1983. 5. 인천 제물포고 교사 한규태 씨가 구속, 징역·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

- '이병설' 간첩사건 : 1986. 7. 15. 『민중교육』지 사건 해임교사 유상덕(민주교육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전 성동고 교사) 씨가 안기부로 연행되어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이병설과 접촉한 혐의로 8. 14. 구속된 사건.

9) 이상 시대 배경은 박원순, 「교육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참조.

10) 진실화해위 양○○ 2007. 3. 29. 진술청취.

11) 진실화해위 심○○ 2007. 4. 4. 진술청취.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1983. 1. 11. 전주지방법원에 기소(검사 : 안대찬)하였다.

라. 재판과정

전주지방법원은 1983. 1. 24. 제1차 공판을 시작으로, 2. 7. 제2차, 2. 21. 제3차, 3. 7. 제4차, 3. 21. 제5차, 4. 18. 제6차, 5. 2. 제7차, 5. 14. 제8차, 5. 21. 제9차 공판에 이어 5. 24. 판결을 선고(재판장 부장판사 이보환, 판사 김능환 임종윤)하였다. 이광웅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박정석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전성원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이옥렬, 황운태, 조성용은 각각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에 대해 선고유예를, 강상기, 채규구, 엄택수는 각각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이광웅 등 9명과 담당검사는 각각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1983. 7. 4. 제1차 공판을 시작으로 7. 11. 제2차, 7. 18. 제3차 공판 후 7. 28. 판결을 선고(재판장 부장판사 이재화, 판사 전도영 김상욱)하였다. 이광웅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박정석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전성원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이옥렬, 황운태, 조성용은 각각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3년, 강상기, 채규구, 엄택수는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등으로 이례적으로 원심보다 오히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이광웅 등 9명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3. 12. 27. 대법원이 모두 기각하여(재판장 대법원 판사 김중서, 대법원 판사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수사과정의 위법성

가. 불법 연행, 구금

1) 수사기록 검토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군산경찰서 대공3계의 협조를 받아 1982. 11. 2.부터 피해자 이광웅, 박정석 등을 영장 없이 연행, 대공분실과 근처 무주여인숙에 영장 없이 짧게는 10일부터 길게는 23일간 구금 상태로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이광웅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2. 11. 16. 제1회 자술서 작성을 시작으로 11. 19.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1. 23. 제2회 자술서, 11. 29.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2. 2.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12. 7.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6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박정석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2. 11. 16. 제1회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11. 19.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982. 11. 23. 제2회 자술서, 11. 30.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2. 8.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2. 10.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6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전성원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2. 11. 17.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11. 19.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1. 23. 제2회 진술서, 11. 23.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2. 9. 제3회 진술서, 12. 9.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6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황운태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2. 11. 17. 제1회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11. 19.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2. 9. 제2회 자술서, 12. 9.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4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이옥렬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2. 11. 17. 제1회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11. 19.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1. 23. 제2회 자술서, 11. 23.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2. 9.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5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채규구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2. 11. 17. 제1회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11. 19.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2. 7.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3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강상기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2. 11. 18. 제1회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11. 19.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2. 8.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3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엄택수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2. 11. 18. 제1회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11. 19.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2. 6.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3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조성용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2. 11. 24. 제1회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11. 25.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1. 28.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2. 10.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4회에 걸쳐 자백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1982. 11. 16. 이광웅은 제1회 진술서에 120여 쪽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기재하면서 1978년부터 1982년까지 박정석, 전성원, 조성용 등을 만난 일시, 장소, 대화내용까지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위 진술서에서 오송회 구성, 북한 찬양 등 범죄사실 대부분의 내용을 자백하고 있다.

1982. 11. 16. 박정석은 52쪽 분량의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여 1978. 4.부터 1982. 11.까지 이광웅, 조성용, 전성원 등을 만난 일시, 장소, 대화내용, 이적단체 구성 과정까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박정석은 위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였고,

1982. 11. 17. 전성원은 25쪽 분량의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여 1981. 10.부터 1982. 10.까지 이광웅, 박정석과 접촉하며 만난 일시, 장소,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전성원 역시 위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하였고,

그 외 1982. 11. 18. 채규구(14쪽), 이옥렬(21쪽), 강상기(7쪽), 엄택수(8쪽), 고환규(6쪽), 고완근(8쪽), 최정식(3쪽)¹²⁾ 등이 같은 날짜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의 진술

전주지법 제6차 공판에서 이광웅, 박정석은 “1982. 11. 2. 군산 소재 부산초밥 집에서 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대공분실에 감금되어 외부와 접견 교통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¹³⁾

전성원은 “11. 2. 부산초밥 집에서 이광웅, 박정석에 이어 경찰에 연행되어 가족과 연락도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채규구는 “11. 6. 토요일 오후 군산경찰서에 다녀가라는 전화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바로 대공분실로 이동되었다”고 진술하였고,¹⁴⁾

조성용은 “11. 19. 남원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KBS남원방송국으로 찾아와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바로 연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⁵⁾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박정석은 “연행일을 1982. 11. 2.로 기억한다, 은행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은 날이었다, 그날 저녁 7시경 음식점에서 음식점 주인이 이야기하여 이광웅과 함께 식당 밖에 나가보니 형사가 학생이 문제가 있어 경찰서에 와 있으니 신분확인을 해달라고 하여 이광웅이 먼저 대기하고 있던 지프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고, 약 10분 후에 나도 같은 이유로 데리러 왔다, 나중에 전성원도 같은 이유로 끌려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¹⁶⁾

강상기는 “11. 4. 오후에 군산경찰서 정보과 형사 문○○이가 군산제일고에서 수업중이던 나를 연행하러 왔다, 군산경찰서에서 이광웅, 박정석의 평소 연행 중 의심할 만한 것이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고 진술하였고,¹⁷⁾

12) 고환규, 고완근, 최정식 3명은 군산제일고 동료교사로서 당시 함께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석방된바, 1983. 1. 17.公安부장검사가 검찰총장에서 올린 「공안사범에 대한 불기소 승인 품신」에 따르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이 초범이고 동료교사들의 처지에서 범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어’ 기소유예한 것으로 쓰고 있음.

13) 1983. 4. 18. 706~758쪽.

14) 1983. 4. 18. 791쪽.

15) 1983. 4. 18. 808쪽.

16) 2007. 1. 5. 진술청취.



이옥렬은 “연행된 날이 어머니 생신잔치를 하고 있던 1982. 11. 5.이었다.¹⁸⁾ 교감이 군산경찰서 정보과로 가보라고 전화를 해주었다, 군산경찰서 정보과로 찾아가니 정보계장이 ‘이광웅, 박정석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전주에 좀 가야 되겠다’고 하였다, 경찰미니버스로 정보계장과 동행하여 전주 대공분실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¹⁹⁾

조성용은 “1982. 11. 초경 정오 남원경찰서 정보과장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남원경찰서 정보과로 나가자, 수사관 김○○, 신○○ 등이 간첩 이광웅과 내통을 하였다고 하며 음박질렀다, 이때부터 1982. 12. 10.경 변호인을 처음 접견할 때까지 대공분실과 여인숙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채규구는 “1982. 11. 초 이광웅, 박정석이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고 학교에 소문이 났다, 강상기 등이 경찰에 조사를 받자 학교가 뒤숭숭해지기 시작했다, 1982. 11. 6. 토요일 오후 교감으로부터 군산경찰서에 안춘기와 함께 다녀가라는 말을 전해듣고 군산경찰서로 출두하였다, 저녁 무렵 경찰버스 편으로 전주 대공분실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며,²⁰⁾

엄택수는 “1982. 11. 13. 토요일 오전 수업이 끝나고 교감이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어 오라고 한다가에 군산경찰서에 출석하였다, 2층 정보과에서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경찰 봉고차를 타고 어디론가 옮겨졌다, 대공분실 지하실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²¹⁾

3) 수사관들의 진술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대공분실장 김○○ 경감, 김○○ 경위, 김○○ 경장, 심○○ 경장(이상 전북도경 대공분실), 여○○ 경장, 김○○ 경장, 김○○ 경장, 김○○ 경장, 김○○ 순경, 양○○ 순경(이상 군산경찰서), 김○○ 순경, 김○○ 순경(이상 전주경찰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양○○은 “1982. 11. 2.경 여러 명의 수사관들이 군산 시내 식당에서 이광웅, 박정석 등을 연행하여 귀가조치 없이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구금한 채 조사하였다, 피의자가 많아서 무주여인숙이라는 곳에서도 조사하였다, 20일 넘게 대공분실에서 조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²²⁾

17) 2007. 1. 11. 진술청취.

18) 이옥렬은 자신의 연행일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연행된 날이 어머니 생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 어머니의 생일은 음력으로 9월 20일이라고 함.

19) 2007. 1. 16. 진술청취.

20) 2007. 1. 18. 진술청취.

21) 2007. 1. 22. 진술청취.

22) 2007. 3. 29. 진술청취.

위 김○○은 “여인숙에서 십수일 조사하였다, 분실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²³⁾

위 심○○은 “정확한 것은 모르나 20여 일 이상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무주여인숙인데 대공분실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인원이 많아 대공분실 수사실에서 모두 조사하기 힘들어 여인숙을 빌려 조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²⁴⁾

위 김○○은 “약 20일간 대공분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²⁵⁾ 위 김○○은 피의자들을 연행한 것은 1982. 11. 2.경이었으며, 조사기간은 약 20여 일 이상 되었고, 피의자들이 대공분실에서 수사관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²⁶⁾

4)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서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면서 피해자 전원이 스스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범죄사실을 최초 진술서에서부터 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1심 법정에서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982. 11. 2.경부터 차례로 불법 연행되어 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들도 20여 일 이상 불법 구금한 채 조사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은 1982. 11. 2.에, 강상기는 11. 4.에, 이옥렬은 11. 5.에, 채규구는 11. 6.에, 엄택수는 11. 13.에 각각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21일, 20일, 19일, 10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의 접견 소통이 차단된 채 고립,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불법 구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²⁷⁾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3) 2007. 4. 3. 진술청취.

24) 2007. 4. 4. 진술청취.

25) 2007. 4. 6. 진술청취.

26) 2007. 4. 12./ 4. 13. 진술청취.

27)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나. 가혹행위

1) 피해자들의 진술

검찰 조사시 박정석은 “경찰에서 이광웅이 진술했다면서 종이쪽지에 내용을 기재하여 와서 맞추어 쓰라고 하여 며칠씩 잠도 못 자고 지친 상태이고, 또 어떤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써주었다”고 진술하였고,²⁸⁾

황윤태는 “경찰의 추궁에 못 이겨 없는 사실을 지어서 이야기하였다”,²⁹⁾ “경찰 수사과정에서 억박지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³⁰⁾ 이광웅은 “경찰 조사시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작문을 써보라고 요구하여 작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³¹⁾ 채규구는 “수사관이 기억에도 없는 사실을 쓰라고 하여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³²⁾

전주지검 공판기일에 이광웅은 “전부 경찰에서 모진 고문이 뒷받침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검찰에까지 연장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³³⁾ “전기고문, 비행기고문 등이 있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을 불러서 수사기관으로 되돌아가 고문이 시작될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³⁴⁾

박정석은 “심하게 구타당하고 지하실로 끌려가 발가벗겨진 채로 비행기고문, 전기고문을 당했다”,³⁵⁾ “5일 동안에 4일을 못 자고 피로한 채 계속 잠을 재우지 않아 못 자고 있는데 이광웅이 고문을 받으면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다”,³⁶⁾ “검찰 조사시 수사형사 6명이 들어와 입회를 한 일도 있다”고 진술하였다.³⁷⁾

전성원은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을 당하였고”,³⁸⁾ 검찰 조사시 “경찰관 5명을 불러 대질신문을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³⁹⁾ 채규구는 “항의하다 지하실에 끌려가 맞기도 했다. 불러주는 대로 수도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썼다”고 진술하였고,⁴⁰⁾ 이옥렬은

28) 전주지검 박정석 피의자신문조서(4회), 1982. 12. 28. 2,688쪽.

29) 전주지검 황윤태 피의자 신문조서(2회), 1982. 12. 15. 2,388쪽.

30) 전주지검 황윤태 피의자 신문조서(3회), 1982. 12. 17. 2,441쪽.

31) 전주지검 이광웅 피의자 신문조서(10회), 1983. 1. 3. 2,879쪽.

32) 전주지검 채규구 피의자 신문조서(2회), 1982. 12. 15. 2,371쪽.

33) 전주지법, 3차 공판, 1983. 2. 21. 573쪽.

34) 전주지법, 6차 공판, 1983. 4. 18. 708쪽.

35) 전주지법, 6차 공판, 1983. 4. 18. 754쪽.

36) 전주지법, 6차 공판, 1983. 4. 18. 759쪽.

37) 전주지법, 6차 공판, 1983. 4. 18. 761쪽.

38) 전주지법, 6차 공판, 1983. 4. 18. 786쪽.

39) 전주지법, 6차 공판, 1983. 4. 18. 788쪽.

“경찰에서 비행기고문을 한 번 당하고 여러 날 시달렸다”고 진술하였다.⁴¹⁾

진실화해위 조사에서⁴²⁾ 박정석, 황운태는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 고문을 당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협박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강상기는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통닭구이, 물고문을 당했고, 검찰조사시 수사경찰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⁴³⁾

이옥렬은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통닭구이, 물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⁴⁴⁾ 채규구는 “대공분실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폭행을 말렸던 수사관도 있었다. 여인숙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회유와 협박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⁴⁵⁾

2) 참고인들의 진술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강웅순은 “수사관으로부터 구둣발과 경찰봉으로 무수히 구타당하였으며 무릎이나 손 등이 모두 퍼렇게 멍이 들었다. 여인숙에 조사받을 당시 잠을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하게 하여 몽롱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⁴⁶⁾

박두술은 “수사관이 자신의 뺨을 수차에 걸쳐 때리며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고,⁴⁷⁾ 하영춘은 “답변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수시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얻어맞았으며, 심지어 의자로 서너 차례 맞았다”고 진술하였고,⁴⁸⁾

고환규는 “검찰 조사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북한 노래를 세 차례 들었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⁴⁹⁾

3) 수사관들의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군산경찰서 양○○ 순경은 “대공분실에 지하실이 있었는데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⁵⁰⁾ 김○○ 순경은 “가혹행위를 하여 자백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⁵¹⁾ 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가혹행위를 부인하였다.⁵²⁾

40) 전주지법, 6차 공판, 1983. 4. 18. 792쪽.

41) 전주지법, 6차 공판, 1983. 4. 18. 797쪽.

42) 이광웅은 사망하고, 전성원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진술청취를 하지 못함

43) 2007. 1. 11. 진술청취.

44) 2007. 1. 16. 진술청취.

45) 2007. 1. 18. 진술청취.

46) 2007. 2. 26. 진술청취.

47) 2007. 3. 7. 진술청취.

48) 2007. 3. 27.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자술서.

49) 2007. 3. 7. 진술청취.

50) 2007. 3. 29. 진술청취.



반면, 당시 군산경찰서 김○○ 경장은 “고문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으나, 전성원이 전북도경 대공분실 지하에 다녀와 몸을 부들부들 떨며 기진맥진하는 걸로 봐서 고문을 받고 온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⁵³⁾

김○○ 경장은 “여인숙에서 조사할 때 한번 정도 대공분실 직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나 돌아온 황윤태의 모습이 축 처진 모습으로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으며 맥이 탁 풀린 모습을 하고 있어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 것으로 생각했으며, 검사가 조사내용에 대한 수정 등을 문의하면 상의하기 위해 가끔 갔던 일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⁵⁴⁾

전북도경 대공분실 심○○ 경장은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모르나 수사실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채규구나 황윤태가 신○○에게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강상기에게 약을 사다 준 적이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는 동안 검사실에 몇 번 간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⁵⁵⁾

김○○ 경위는 “대공분실 사무실에서 신○○에게 구타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광웅이 부인한다고 하여 이광웅과 대질하기 위해 검찰에 한 번 간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고,⁵⁶⁾

김○○ 경장은 “신○○이 피의자들이 오면 각목이나 몽둥이, 진압용 경찰봉 등으로 사정없이 때린다,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방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대로 진술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피의자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가끔 신○○의 지시로 이광웅이나 다른 피의자들을 지하 조사실까지 데려다주곤 하였는데, 그때 신○○이 경찰봉이나 손, 발 등으로 구타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처음 자술서를 작성할 때는 며칠씩 잠을 안 재우면서 조사를 한다, 자술 내용도 원하는 내용이 완성될 때까지 수십 번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광웅이 지하조사실에 갔다 온 뒤 지하에서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은 일이 있고, 어떤 피의자가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을 때 신○○이 주전자를 들고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피의자들이 지하실로 내려가면 피의자들의 비명소리와 신○○, 박○○의 고함소리가 섞여

51) 2007. 4. 3. 진술청취.

52) 2007. 4. 6. 진술청취.

53) 2007. 3. 28. 진술청취.

54) 2007. 4. 2. 진술청취.

55) 2007. 4. 4. 진술청취.

56) 2007. 4. 13. 진술청취.

들렸다. 고문이 끝난 뒤 신○○이 피의자들에게 ‘너 똑바로 진술해, 안 그러면 다시 데리고 와서 당할 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⁵⁷⁾

4) 소결

이상과 같이 피해자들은 전주지법 공판기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인들까지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대공분실 수사관 심○○, 김○○, 김○○은 대공분실 수사관이 피해자들을 구타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검찰 조사에도 피해자들을 조사한 수사경찰관들이 입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심각한 구타,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에서도 수사경찰이 입회하는 등 강압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경찰에서의 허위자백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⁵⁸⁾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범죄사실의 허위조작 여부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오송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 공산계열을 찬양 고무하였다는 점,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점, 불고지하였다는 점이다.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압수된 이적표현물 외에 물증이 없다.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밖에 없다. 대화 내용들이어서 목격자도 없다. 증인의 증언도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은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다.

한 수사경찰은 “당시 수사방식에 대해 자술서를 여러 번 작성하게 하였다. 작성된 자술서를 지휘부에 보고하면, 지휘부에서 다른 피의자들의 자술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 이러

57) 2007. 4. 17. 진술청취.

58) 대법원 83도1953(1983. 9. 27.), 대법원 91도1(1992. 3. 10.)



한 내용이 빠졌으니 보강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면 다시 자술서를 작성케 한다거나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했다.⁵⁹⁾

다른 수사경찰은 “오송회 결성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사실도 이광웅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대부분 자기가 그랬다고 인정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⁶⁰⁾

또 다른 수사경찰은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공과장과 계장, 분실장이 모여 회의를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그것 때문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광웅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사실을 이적단체로 확대하려는 간부급들의 공명심으로 인해 사건이 확대되면서 무리하게 이적단체구성으로 되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 등 강압 수사가 뒤따랐던 것이다”라고 말했다.⁶¹⁾ 수사경찰들도 당시 강압에 의한 무리한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하에서 판결 범죄사실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나.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 여부

1) 판결내용

판결은 이광웅의 범죄사실 1항 내지 22항, 24항 내지 40항, 42항 내지 52항, 54항 내지 69항 등 65개항.

박정석의 범죄사실 1항 내지 39항, 41항 내지 53항, 55항 내지 65항 등 61개항,

전성원의 범죄사실 1항 내지 7항,

이옥렬의 범죄사실 1항 내지 4항,

황윤태의 범죄사실 1항 내지 3항,

조성용의 범죄사실 1항 내지 4항에 대하여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또는 국외공산계열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찬양고무라고 처벌한 행위들은 시기적으로 1978. 4.부터 1982. 10.까지 4년 6개월간에 걸쳐 발언한 것들로,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발언도 아니라 동료교사 2~3명이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나눈 짧은 대화이다.

군산제일고 교정이나 그 부근 숲속에서 산책 중에, 음식점 또는 주점이나 주거지에서,

59) 군산경찰서 김○○ 경장 2007. 4. 2. 진술청취.

60) 김○○ 경장 2007. 3. 28. 진술청취.

61) 대공분실 수사관 김○○ 경장 2007. 4. 17. 진술청취.

잔디밭이나 가게에서, 버스정류장 등에서 행한 대화이다. 그 대화내용은 대체적으로 북한 실정⁶²⁾ 또는 김일성에 대한 것⁶³⁾,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것⁶⁴⁾, 미군철수⁶⁵⁾, 광주사태⁶⁶⁾, 정부 비판⁶⁷⁾ 등에 관한 것이며, 음주 중에 어려서 배운 빨치산 노래를 부른 것도 있다.

박정석의 범죄사실 중 51개항은 이광웅의 범죄사실과 공통되며, 그 대부분은 이광웅의 발언에 긍정적 태도를 보여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전성원은 4개항, 이옥렬은 4개항, 황운태는 3개항, 조성용은 4개항이 각각 이광웅의 범죄사실과 공통되며, 그의 발언에 수긍하거나 긍정적 태도를 보여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2) 소결

이 사건에서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행위에 대하여 반공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및 국외공산계열 찬양고무죄는 반공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가 1980. 12. 31.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옮겨 규정되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은 헌법상의 평화통일 지향과 양립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헌법상 평등권,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요소가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과 제5항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62) 박정석 범죄사실 17항 “인도에서 아시아지역 청소년 축구대회가 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커트를 찢자고 하니까 북한 선수들이 스커트가 무엇이냐 방벽구축하가다 라고 말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우리말로 모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언어에 있어서도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등.

63) 조성용 범죄사실 1항 “1978. 4. 살아있는 김일성이 진짜지 우리가 독립투사로 알고 있는 홍길동이처럼 신출귀몰한 재주를 가진 김일성은 전설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북의 김일성이 진짜다. 1920년대나 30년대에 장백산을 무대로 활약한 김일성은 홍안장군이였다” 등.

64) 박정석 범죄사실 6항 “월남정부는 불란서 식민지 정권의 연장으로서 민족사적으로 정통성 없으며 부패하고 무능하여서 패망한 것은 당연하므로 베트남은 패망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 민족주의가 승리한 것이다. 월남 전쟁은 미국의 이해에 의하여 조작된 전쟁이다. 불란서 식민지 당시 불란서에 아부한 기회주의자들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월남정부를 미국이 지지하고 그 전쟁을 수행한 것은 잘못이다” 등.

65) 이광웅 범죄사실 22항 “나는 거리에서 미국인을 만나면 미국의 교활성에 대한 증오감이 생긴다. 그것은 미국의 후진국 경제정책이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비열한 경제정책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인을 만났을 때 양키고홈이라고 소리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몰아내야 우리나라가 자립할 수 있다” 등.

66) 이광웅 범죄사실 36항 “학생들을 군인들이 마구 칼로 찌르고 여학생의 유방을 도려냈다. 광주만한 도시가 한군데서만 더 일어났더라면 아마 현 정부는 깨끗이 손들었을 것이다. 광주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광주시민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불이 꺼진 것이 아니다. 그 응어리는 언젠가는 터질 날이 있을 것이다” 등.

67) 이광웅 범죄사실 44항 “현 정부는 갈로서 정권을 잡은 정부이고, 광주사태를 일으켜서 무고한 양민을 살상했으며, 정치를 모르는 군사독재 정부다. 장영자, 이철희의 부부 금융부정사건은 전두환의 친척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등.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危害)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거나,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恣意的) 지배에 의해 내부체제를 파괴·변형시키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⁶⁸⁾

피해자들이 찬양고무를 하였다는 발언들은 경찰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자백한 내용이거나 그 대화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또는 국외공산계열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는데다가 위헌의 요소가 있는 국가보안법 제1항 및 제2항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이적단체구성 여부

1) 판결내용

판결은 이광웅의 범죄사실 41항 및 박정석의 40항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의 이적단체구성죄를 인정하였다. 즉 1982. 4. 19. 주점에서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이옥렬, 황운태 등이 군산제일고 뒷산에 올라가 4·19위령제를 지낸 후 각자 자아비판을 하고 나서 4·19와 광주사태의 정신을 잊지 말자, 교사 자신들이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 현실비판의식을 높이자, 학생들에게 빼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현실비판의식을 높이자라는 등의 토론을 하고, 모임의 이름을 오송회로 하자고 명명하고 한자리에 오른손을 포개어 놓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맹세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등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오송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2) 소결

조사결과,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이옥렬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오송회 결성과 관련하여 자백하였으나, 1심 법정에서는 4·19위령제를 지낸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오송회라는 명칭이나 조직을 부인하였다. 4·19위령제를 지내고 맹세를 한 것 뿐이었다. 황운태는 먼저 산을 내려와 모른다는 것이며, 증인인 주점주인 전귀례는 이들에게 막걸리를 팔았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수사경찰들은 ‘오송회’라는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 수사가 무리하게

68) 헌법재판소 89헌가113(1990. 04. 02) 참조.

진행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만 가지고 이적단체를 인정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다. 더구나 이광웅, 박정석 등 5명이 ‘오송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한 판결은 아무런 물증이나 강령, 규약도 없는 상태에서 실체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하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은 위헌의 요소가 있는 동법 제1항 및 제2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헌의 요소를 갖고 있다. 설령 이광웅 등이 판결이 적시하는 바와 같이 4·19와 광주사태의 정신을 잊지 말고 현실비판의식을 높이자는 등의 목적에서 ‘오송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광주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한 군부세력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고, 광주시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합법화되었다.⁶⁹⁾

판결은 증거 없이 오송회 결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을 오히려 확대 적용한 위법이 있다.

다. 이적표현물소지 여부

1) 판결내용

판결은 이광웅의 범죄사실 23항(김지하의 〈오적〉 시가 포함된 『불귀』 시집 복사본 1부를 소지하고 엄택수, 강웅순에게 각 1부씩 교부), 제53항(오장환의 〈내나라 오 사랑하는 내나라〉 등 19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 『병든서울』 복사본을 박정석, 김광훈, 전성원, 송치성, 장종근에게 각 1부씩 교부), 제69항(김산으로부터 북한의 선전뼈라를 교부받음),

박정석의 54항(『병든서울』 복사본을 한승훈에게 교부), 60항(『불귀』 복사본을 소지하고 전성원에게 빌려줌),

전성원의 8항(『불귀』 1권을 채규구에게 빌려줌), 9항(『병든서울』 복사본 1권을 이광웅에게 교부받아 소지),

강상기의 3항(『불귀』 복사본 1권을 소지),

69) 대법원 96도3376(1997. 4.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채규구의 3항(『불귀』 복사본 1권을 소지), 엄택수의 3항(『불귀』 복사본 1권을 소지) 등에 대하여 이적표현물소지죄를 적용하였다.

2) 소결

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는 동법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따라서 제5항은 제1항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1항은 그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어 제5항에도 같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위 『불귀』 시집에 실렸다는 김지하의 <오적>은 1970. 5. 『사상계』에 발표된 사설 형태의 시 『담시(譚詩)』⁷⁰⁾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당시의 대표적 권력층으로 꼽고 이를 을사조약 때의 오적(五賊)에 비유하여 그들의 부정부패와 초호화관의 방탕한 생활을 신랄하게 풍자한 내용이고,

위 오장환의 『병든 서울』은 1945. 8. 15.~1946. 3. 사이 7개월여 간에 쓰여진 시 19편이 수록된 시집으로, 당시 시인은 일기처럼 썼다고 하는바 각 시편에는 급작스레 찾아온 해방의 감격과 신국가 건설의 희망과 기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 실망과 좌절과 분노의 감정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⁷¹⁾

이렇듯 위 <오적> 및 『병든 서울』은 작가의 현실참여적 경향과 작품의 새로운 형식 및 사실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한국 문학사에서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다.⁷²⁾

따라서, 위 두 시집은 그 자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危害)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을 확대 적용한 위법이 있다.

70) <오적>은 발표 직후 발간된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제40호(1970. 6. 1)에 수록되면서 당국의 주목을 받았고, 결국 『민주전선』 주간과 편집위원, 『사상계』 발행인과 기자 등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재판을 받은 대표적 필화 사건이 되었다. 이 재판은 이항녕, 선우휘, 박두진 등 당대의 유명 문인들의 감정 또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계급의식을 조성, 북한의 선전자료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71) 오장환(1918. 5. 15. 충북 보은 출생, 1947년 말 월북, 1951년 한국전쟁중 지병으로 사망)의 시집이 문제시된 것은 월북 작가라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72) <오적>과 『병든 서울』을 주제로 한 논문은 단행본 및 학술서에 수록된 수십 편의 글 외에 학위논문만도 각각 5편, 8편이 있다. 대표적으로 김홍진의 『한국 근대 장시의 서사성 연구』(한남대 박사학위논문, 2003)와 도종환의 『오장환 시 연구』(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5)를 들 수 있다.

라. 불고지 여부

1) 판결내용

판결은 강상기의 범죄사실 1항(이광웅의 16, 42, 46, 49, 50, 63항 발언) 및 2항(박정석의 23항 발언), 채규구의 1항(이광웅의 8항 발언) 및 2항(박정석의 59항 발언), 엄택수의 1항(이광웅의 22, 61, 65항 발언) 및 2항(박정석의 8항 발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0조를 적용, 불고죄를 인정하였다.

2) 소결

먼저, 불고지의 전제사실인 피해자들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조작된 것이거나 찬양고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불고지 조항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의 요소가 있다. 나아가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듣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러한 발언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그리하여 1991. 5. 31. 국가보안법 제10조 내용 중에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 동법 제7조 관련 불고지는 삭제되었다.

VI. 결론

1. 진실규명

오송희 사건은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하여 강제연행·장기구금·고문 등에 의한 자백을 받아 다수의 교사들을 처벌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전북도경은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 『병든 서울』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하여 피해자들을 불법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대화내용을 자백을 받았는바, 이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증거로 하여 이 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한 것으로 처벌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피해자들이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심각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그 불법행위나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구금, 고문한 수사관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전주지법에 기소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전주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한 것이며, 결코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근거로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한 위법을 범하였다. 또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찬양고무 조항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오히려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더구나 전주지법은 피해자들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는데, 광주고법이 1심 형량을 높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형량을 확정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2. 권 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